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22호 2019. 10. 30.(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19-122호 도로명주소 고시 2

제2019-123호 고제면 궁항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4

공 고

제2019-1182호 「고제 용초마을(리도205호선) 도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5

제2019-1299호 (사)거창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무원 채용 모집 공고 9

제2019-1327호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제2019-1345호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3차) 21

제2019-1347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6

제2019-1354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6

제2019-135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46

제2019-1359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7

제2019-1361호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3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30.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연곡길 60-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92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연곡길 60-4	2009-04-01	2019-10-30	마을 뒷산이 제비 모양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고제면 공항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거창군 고제면 공항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고제면 공항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 업 비 : 1,223백만원(군 900, 도 86, 군 199, 자부담 38)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공항리 일원
 - 나. 세부사업 내용
 - 주택정비 :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 경관시설 정비 : 마을 담당정비, 쉼터 및 소공원 조성 등
 - 기반시설 정비 : 상수도시설 설치, 배수로 및 사면정비
 - 휴먼케어 및 지역역량강화 등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 11. ~ 2020. 12.(1년)
7.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 개발담당(☎940-8272)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제 용초마을(리도2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제 용초마을(리도2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0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고제 용초마을(리도2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 나.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용초마을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321.0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도로담당)

2. 보상내용

- 가. 토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일원(붙임참조)
 - 나. 지장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25,977	2,856					
1	고제면 봉산리	2478	도	14,347	885		국(건설부)			
2	“	1476- 3	전	76	76	봉산리	이윤만			
3	“	1477-2	답	1,068	177	울산 동구 봉수로 209, 104동 802호 (전하동, 이편한세상 전하)	유재욱			
4	“	1484-4	대	289	34	봉산리 1425	이영순			
5	“	1484-1	도	106	31		거창군			
6	“	1485-1	도	149	67		거창군			
7	“	1491- 1	도	132	94		거창군			
8	“	1827-2	도	126	95		거창군			
9	“	산200	임	3,050	112	궁항리	박종찬			미등기
10	“	1770-2	도	271	167	봉산리 1492	채음전			
11	“	1773-1	도	33	17		거창군			
12	“	1774-1	도	36	4		거창군			
13	“	1461-7	도	26	4	봉산리	이종원			미등기
14	“	1426- 3	도	192	116		거창군			
15	“	1426- 2	대	7	7	봉산리	채도수			미등기
16	“	1426-1	전	40	20	봉산리	백남규			미등기
17	“	1476-1	전	20	14	봉산리	박왕윤			미등기
18	“	1476- 2	도	73	73		거창군			
19	“	1477- 1	도	26	26	거창읍 상동4길 21	신채규			
20	“	1474- 2	도	46	46		거창군			

21	“	1474-1	대	340	23	진주시 호탄동 602-1, 대경빌라트 102동 507호	이현만			미등기
22	“	1472	대	170	45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69-35	최광옥			
23	“	1472-1	도	9	9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69-35	최광옥			
24	“	1470-1	대	397	83	봉산리 1470-1	이기분			
25	“	1470-2	도	23	23		거창군			
26	“	1470-3	도	69	31	봉산리 1470-1	이기분			
27	“	1502-1	대	258	22	봉산리 1438	정근용			
28	“	1502-2	도	10	10		거창군			
29	“	1501-2	도	3	3		거창군			
30	“	1501-1	대	377	50	고제면 용초길 168	허현수			
31	“	1492	대	383	26	봉산리 1491	채정식			
32	“	1768	대	76	33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521, 열매마을 아파트9단지 910-1801	서덕영			
33	“	1769-1	대	393	53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521, 열매마을 아파트9단지 910-1801	서덕영			
34	“	1769-2	도	3	3		거창군			
35	“	1827-1	천	7	7	대정리	신채성			미등기
36	“	1770-1	전	1,851	166	봉산리 1491	채정식			
37	“	1772-1	묘	1,310	45	남상면 무촌리	문판봉			미등기
38	“	1772-2	도	23	23		거창군			
39	“	1773-2	도	129	112		거창군			
40	“	1772-3	도	33	24		거창군			

(사)거창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무원 채용 모집 공고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촌관광사업 수행 및 홍보운영 지원을 위한 (사)거창군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사무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사)거창군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담당 업무	채용 인원
사무원	농촌관광사업 업무담당 및 체험휴양마을 홍보·운영지원 등	1명

2. 응시자격

-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응시결격 사유 불임1)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
- 컴퓨터 사용이 능숙한 자(컴퓨터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응시연령 : 개시일 현재 만25세 이상 ~ 만50세 미만 남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자격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 우대조건
 - 농촌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 이수자
 -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
 - 유관단체 및 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채용
 - 홍보관련 경력자 우대 채용

4. 채용 시행주체

- 채용공고 : 거창군 공고
- 채용계약체결 : (사)거창군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 거창군에서 공고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채용 시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민간단체(거창군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소속으로 채용됨

4. 전형일정

- 서류접수 일자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9. 10. 25.~11. 4. 09:00~18:00까지
 - 접수처 : sys9425@hanmail.net (☎ 055-940-8165)
- ※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 면접심사 : 2019.11. 5.예정
- 합격자 발표 : 향후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1부(붙임2,3)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2매 정도)(붙임4)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주소이력사항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이력서(붙임5)

6. 기타사항

- 근무장소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계약기간 : 2019.11.06~ 2019.12.31.
 - ※ 1년 단위 갱신 계약
 - ※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조건
 - 주 5일
 - 1일8시간(09:00~18:00)
- 급여 : 월175만원
 -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제외 후 지급
 - * 출장비 등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절차 등 변동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거창군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055-940-8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시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붙임3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동의일로부터 10년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19년 월 일

(사)거창군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귀하

자기소개서

성 명 :

.....

.....

.....

.....

.....

.....

.....

.....

.....

.....

.....

.....

.....

.....

.....

2019. . .

작성자 (서명)

- ※ 특별한 양식 없이 지원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거창군 공고 제2019-1327호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이장 임명시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한 조항을 삭제하고, 해임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결격사유 확인 불가한 조항 삭제.(안 제3조)
 - 나. 이장 해임 구체화 및 불합리 해소.(안 제3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로 구체화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 제4조)
 - 각 조의 “자”를 “사람”으로 개정
 - “각 호의 1”를 “각 호의 어느하나”로 개정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84, 팩스 055-940-3179, 이메일
sunflower0582@korea.kr

붙임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제4조(명부관리)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명부 관리에 필요한 이력서를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u>자</u>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u>자</u>를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u>등록기준지 신원조회 후</u> 임명한다.</p> <p>② 이장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거창군 행정리 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u>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u>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때 <p>제4조(명부관리) 이장으로 <u>추천된 자</u>는 명부관리에 필요한 이력서를 <u>임용 예정일 전일까지</u> 읍·면장에게 제출한다.</p>	<p>제1조(목적) ① ----- -----<u>제81조제2항</u> ----- ----- -----.</p> <p>제3조(임명절차) ① ----- ----- <u>사람으로서</u> ----- --된 <u>사람을</u> ----- ----- <u>임명한다.</u></p> <p>② -----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u> 3. (현행과 같음) <p>제4조(명부관리) 이장으로 <u>임명된 사</u> <u>람은</u> ----- <u>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u> ----- -----.</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개정 2010. 11. 2.>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3차)

거창군에서는 거창읍 중앙리, 대동리, 상림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 및 나대지 등을 매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거 창 군 수

□ 매입대상지 선정 기준

- ① 주차환경이 열악한 거창읍 중앙·상림·대동리 등 2층 이하 저층 주택 및 나대지
- ② 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한지 30년 (사용승인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 ④ 대지면적이 60㎡ 이상 500㎡ 미만이어야 한다.
- ⑤ 대지경계 등 부동산 물권권리에 하자가 있는 필지는 제외한다.
- ⑥ 기타 주차장법 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매입필지 가점 적용 기준

- ① 나대지나 폐가는 가점 적용한다(단, 건축 경과년도와 무관함)
- ② 면적(인접필지와 병행 신청할 경우 합필면적)이 크거나 공지 인접필지는 가점 적용하며, 기타 지역적인 균형배치 및 인근의 공영주차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건축물 건축 경과년도(잔존가치가 적은 건축물 등)에 따라 가점 적용한다.
- ④ 기타 현장조건(경사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등)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한다.

□ 매입대상지 선정 및 계약 방법

- 매수를 신청한 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필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계약한다.
- 매입필지 선정 시 매입계획 필지보다 약30%를 추가 선정하여 예비 매입필지로 지정 후 매매계약 포기자가 있을 경우 점수순으로 이를 대체하여 계약한다.

□ 기타사항

- 매매대상은 소재지상의 모든 물권을 포함한다.
-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 등기상 권리하자가 없어야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명도(거주자 퇴거 포함) 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로 문의(전화 940-338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 신청기간 : 2019. 10. 31. ~ 2019. 11. 19.(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장소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거창군청 3층)

□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직접 신분증 지참 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1)
- 건물(나대지)사진(별지2)

【별지 1】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접수 일자		③ 건물 주 거주여부	(거주, 비거주)
④ 물건소재지				⑤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⑥ 토지소유자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 도로폭	m		⑧ 구조	철근콘크리트 () 벽돌 () 시멘트블럭 () 기타:	
⑨ 대지면적	m ²		⑩ 건물연면적	m ² (지상 층/지하 층)	
⑪ 건물사용 승인일	년 월 일	⑫ 임대가구수	가구		
*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건물(나대지)사진(별지2에 전경.근경 부착)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지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거창군의 현지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본 부지의 매입을 신청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인)			
신청인 (대리인 신청시)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소유자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창군수 귀하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신청 위임장

- 물건 소재지 :
- 대 지 면 적 : m²
- 주 택 유 형 :
- 건축 연면적 : m²(지상 층/지하 층)
- 소유자 성명 :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상기 단독주택지(나대지)의 매입 신청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19. .

붙 임 : 토지(건물) 소유자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임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거창군수 귀하

【별지 2】

건물(나대지) 사진

전 경 (주변 건물보이게)

근 경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원 기준과 서식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안 제3조)
 - 나. 지원 신청 및 절차(안 제4조)
4. 시행규칙 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29. ~ 2019. 11. 18.(20일간)
6. 의견제출
 - 가.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할 곳

- 1)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내(內) 인구교육과
- 2) 전화 : 055) 940-8882
- 3) 팩스 : 055) 940-8905
- 4) 전자우편 : ks3377@korea.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칙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를 출산한 군민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민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3. “학자금”이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이란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5. “전입고등학생”이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6. “국적 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을 말한다.
7. “신청인”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 지원시책 지원금품을 신청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세부 시책 및 지원 기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세부 시책 및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각 시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과 지원기준이 부합하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조건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과 군수는 신청 및 지원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가 세부 시책 및 지원기준(제3조 관련)

분야	세부 시책 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내용
출산 지원	임신축하 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임부 등록 시 10만원 이내 지원
	임산부 영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임부 등록 시 최대 7개월분 지급 (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엽 산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는 신청일로부터 임신 16주까지 산정하여 지급 가임여성은 5개월분을 일괄지급, 임신 될 때까지 추가 가능
	출산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군민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250만원
	출산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 이상 출생아로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 이상 50만원(경상남도 지원 사업)
양육 지원	양육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단, 전입세대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둘째 : 매월 10만원,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0개월까지 지급 셋째 이상 : 매월 30만원,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5년간 지급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당 연간 4박스

분야	세부 시책 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내용
		실제 거주하는 군민	
다자녀 지원	세자녀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 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교의 학자금을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급
전입 지원	전 입 정 착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세대 10만원(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 • 2인 세대 20만원 • 3인 세대 30만원 • 4인 이상 세대 50만원
	전 입 기 념 품 (축하카드)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만원 상당의 전입 기념품(지역 특산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빈 집 정 비 지 원 금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1인 전입 시 15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 투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신고 시 1회, 20리터 45매 이내 (1명 전입 시 22매)
	문화예술 관람권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신고 시 1인 1회 공연티켓 교환권

분야	세부 시책 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내용
	전입고등학생 및 전 입 대 학 생 장 학 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대학 생활관으로 전입하는 대학생 	• 1회, 10만원
	전입고등학생 및 전 입 대 학 생 학 자 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고등학생 : 수업료 전액 • 전입대학생 : 학기별 10만원, 재학중 최대 4학기 지원
	전 입 대 학 생 생 활 관 비 지원		•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중 최대 4학기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보 상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1인 50만원
기타 지원	청년 주택 전세· 구 입 자 금 이 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자로 아래의 대상별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 출산가정 :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가정 - 전입세대 : 전입세대(세대 편입 후 분가세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 잔액 이자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 전입세대 최대 50만원 단, 분야가 중복될 경우 1개 분야만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회 지원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위임 사항 정비
- 나.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으로 물리적 주차 공간 확보 한계를 극복하고 유휴 주차 공간 활용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관리의 관리방법 및 책임 규정 신설함(안 제6조의2)
- 나.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규정 신설함(안 제13조의2)
- 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정 신설함(안 제11조의2)
- 라. 부설주차장의 개방 규정 신설함(안 제15조의2)
 - 부칙 개정으로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세출 추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30. ~ 2019. 11. 19.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2) 전화번호 : 055)940-3388, FAX : 055)940-3349

3) 전자우편 : panpan55@korea.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및 책임) ①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린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 청결 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②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용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이외 주차장 관리 및 이용객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아파트지구개발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원) ① 군수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 개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용의 산정기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사업 등 주차관련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6조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및 책임)</p> <p>①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련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 청결 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p>②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용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p>
<p><u><신 설></u></p>	<p>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p> <p>①~③(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이 외 주차장 관리 및 이용객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아파트지구개발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p>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원 등) ①군수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 개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②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용의 산정기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p>

관 계 법 령

주차장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3814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1조(보조 또는 응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3814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 2012. 4. 13.>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0.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0. 10. 29.]

◎거창군 공고 제2019-135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9-84호(2019.07.25.)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96-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 명 칭 :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A=1,159.3㎡
 - 사업의 규모 : 건축면적 A=385.96㎡, 연면적 A=385.9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21
 - 성 명 : 최 민 식
4. 사업시행기간 : 2019. 07. 25. ~ 2019. 10. 24.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기준 개정
- 나. 거창군 출산 장려 및 인구증가 시책 개정
- 다. 농업기계 임대료의 합리적 반환 기준 마련
- 라. 농림사업 지침(2019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기준 개선

3. 주요내용

- 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정비. (안 제10조)
 -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결정
 - 2) 결정된 농업기계 임대료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
- 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안 제11조)
 - 1)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반액 감면
- 다. 임대료의 반환대상 확대. (안 제12조)

1)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임대농기계 반납 :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라. 위원회의 기능 정비. (안 제19조)

1) 삭제 :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심의

2)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임대사업 계획의 적합여부만을 심의하도록 전국적 통일기준 마련

마. 그 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문장 및 용어 정비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30. ~ 2019. 11. 19.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축산과

- 전화번호 : 055)940-8213, FAX : 055)940-811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
3. 그 밖에 공익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평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를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임차인”을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관리요원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

제11조제1호 중 “장애인으로서”를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제15조제2항 중 “관리요원”을 “군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이 임명 또는”을 “군수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호·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위치)</u>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p>	<p><u>제2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u>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p>
<p><u>제3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u>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u>을 말한다.</p> <p>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p> <p>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임차인”이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p>	<p><u>제3조(정의)</u>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u> <u>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3.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u>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u> ③ <u>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④ <u>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⑤ <u>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u> 	<p><u>제4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u> <u>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u> <u>3. 그밖에 공익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u> ③ <u>군수는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u> ④ <u>군수는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⑤ <u>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관리요원)</u>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u>제8조(계약 및 교육)</u>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요원은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p> <p><u>제9조(임대기준)</u>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신설></p> <p>② (생략)</p> <p>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삭제></p> <p><u>제8조(계약 및 교육)</u>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p> <p><u>제9조(임대기준)</u>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제10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종별 임대료는 별표를 기준으로 징수하며, 임대사업이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u>제10조(임대료)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매년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u> ②~③(현행과 같음)</p>
<p>②~③(생략)</p> <p><u>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 2. 전액면제: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u>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 2. 전액면제: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u>제12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3.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p><u>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한 일 단위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u>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u> 2. <u>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u> 3. <u>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u> 4. <u>임대료를 체납한 경우</u> <p><u>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생략)</u> <u>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u></p> <p><u>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①</u>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6개월 제한 <p><u>가.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u>제17조(비치대장)</u> <u>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4. (생략) 	<p><u><삭제></u></p> <p><u>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u> <u>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u>군수</u>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u></p> <p><u>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①</u>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6개월 제한 <p><u>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u></p> <p>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p> <p><u>제17조(비치대장)</u> <u>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계약대장(별지 제4호서식) 3.~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소장</u>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u>소장</u>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생략)</p> <p>제20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u>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u> 3. <u>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u>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p>제22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u>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농업기술센터 소장</u>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u>군수</u>가 위촉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p><u><삭 제></u> <u><삭 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p>제22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③ <u>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자	임 차 자				
거창군수	성 명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주 소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계 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 대 료	금 원(\)				
농기계 운 반	위 탁 운 반				
	출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킬로미터	원
	입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킬로미터	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작업면적	제곱미터 (일 평)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4.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군수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임차인은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자: 거창군수 (인)

임 차 자:

거창군수 귀하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7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 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본조신설 2009. 4. 1.]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2. 11.>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산정방식
1) 1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1.5퍼센트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1.2퍼센트
3)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1.0퍼센트
4)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0.7퍼센트
5) 5,000만원 이상	농업기계 구입가격 × 0.5퍼센트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9-1361호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거창군수

1. 조 례 명 :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2. 개정 이유

○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에서 농기계 수리 시에 드는 부품대금의 무상 공제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농기계 이용 확대 및 촉진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 수리 시 부품의 무상공제 금액 상향조정함(안 제6조)

1) 10,000원 ⇒ 30,000원

○ 용어 및 문장 정비

- 1) 소요되는 ⇒ 드는, 당일 ⇒ 그 날
- 2) 각호 ⇒ 각 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0. ~ 2019. 11. 19.(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852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기계담당

- 전 화 : 055-940-8212, 팩스 055-940-81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를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농업기계의 수리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농기계순회 수리반”을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예산은 준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기존 제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10,000원”을 “3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 당일”을 “수리한 날”로 한다.

제8조·제10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기계</u>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u>수리정비</u>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u>농기계순회수리반</u> (이하 "<u>농기계순회수리반</u>"이라 한다) <u>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u>농기계순회 수리반</u>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p> <p>제3조(업무) ① <u>농기계순회수리반</u>은 다음 <u>각호</u>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u> 2. <u>우량 농기계 공급지도</u> 3. <u>농기계 활용지도</u> ② <u>삭제(1991. 8. 12)</u></p> <p>제5조(예산) <u>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u> <u>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u></p> <p>제6조(직원) <u>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u> <u>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u></p> <p>제7조(부품대금) ① <u>농기계 수리에 소</u> <u>요되는</u> 부품대금이 <u>기종별 10,000원</u>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u>1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u>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p>	<p><u>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업기계</u>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u>농업기계의 수리 및 교육</u>을 위하여 거창군 <u>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u>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u>(이하 "<u>농기계순회수리반</u>"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p> <p>제3조(업무) <u>농기계순회수리반</u>은 다음 <u>각 호</u>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순회 수리 및 교육</u> 2. <u>우량 농기계 공급지도</u> 3. <u>농기계 활용지도</u></p> <p>제5조(예산) <u>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u></p> <p><u><삭 제></u></p> <p>제6조(부품대금) ① <u>농기계 수리에 드</u> <u>는</u> 부품대금이 <u>기종별 30,000원</u>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u>3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u>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u>수리 당일</u>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u>제8조(망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u></p> <p>제9조(장부비치) (생략)</p> <p><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u></p>	<p>②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u>수리한 날</u>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p>제7조(장부비치) (현행 제9조와 같음)</p> <p><u><삭 제></u></p>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7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 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